2021년도 의무사관후보생(의과) 추가 선발계획

□ 개 요

의사 국가시험 추가실시* 관련 **의과 군전공의요원(인턴)으로 추가 채용되어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추가 선발하고자 함

*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무사관후보생 추가 선발이 가능하도록 병역법시행령 119조 개정('21. 2.1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의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험의 합격자에 대한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지원 기한을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함

□ 선발 절차

❍ 지원 대상

△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의사 면허 소지자**

△ 의과 군전공의 수련기관에 인턴으로 채용되어 **33세까지 정해진 수련과정***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

*** 수련과정**

- 의과 전공의 수련기간 :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 통합 과정, 기초의학 과정으로 정한 수련(교육)기간 : 3~5년

❍ 선발 업무흐름도

지원서 제출	→	**지원서 송부 (3. 9.까지*)**	→	신원조회 (군사안보 지원사령부)	→	**선발자 확정, 통보(5. 1.)**	→	병적편입 자원관리
<본인➡수련기관장>		<수련기관장➡병무청장>		30일 소요		<병무청장➡지방청,수련기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 **군전공의요원(인턴)으로 채용되는 해의 3월 9일까지**(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병역법시행령 제119조 단서조항)

- 의사국시(추가) 시험 일정 : 실기시험 '21.1.23.~2.18. / 합격자발표 2.22.

□ 선발 일정

주요 내용	일 정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누리집, 이음포탈)	’21. 2. 19.(금)
○ **의무사관후보생 현역대체복무지원서 등 접수** (지원자 → 수련기관 → 병무청)	
- **지원자 전산접수 및 공문서, 지원자명단 등록(이음포탈)**	’21. 2.22.(월)~3.9.(화)
- **신원조사 서류* 등 접수(우편)** * 신원진술서(A),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A), 기본증명서(상세), 신용정보조회서	’21. 2.25.(목)~3.17.(수)
○ **지원서류 대조・보완, 신원조사 의뢰**	’21. 3.18.(목)~4.23.(금)
○ **의무사관후보생 선발 및 편입**	’21. 5. 1.

□ 행정 사항

❍ 병무청 : 의무사관후보생 추가 지원안내문 누리집(홈페이지) 및 이음포탈 공지

❍ 군전공의 수련기관(의과) : 의무사관후보생(군전공의) 지원절차 안내 등

❍ 상담소, 지방병무청, 병원협회 등 유관기관 : 민원안내

붙임 1. ’21년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절차 안내(수련기관) 1부.

2. 현역·대체복무지원서(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서식 1부.

3. 신원진술서(A) 서식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1부.

5. ’21년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명단(수련기관용) 서식 1부

6. 의무등사관후보생 업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신청서, 지방병무청 목록. 끝.

2021년도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절차 안내

Ⅰ 의무사관후보생 개요

1. 의무사관후보생이란?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군지정 수련기관에서 수련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후보생 선발·관리, 의무분야 현역장교로 임용하는 제도

2. **지원자격**(의과 의무사관후보생)

□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의사, 면허 소지자**

□ 군전공의 수련기관에 인턴(통합과정, 기초의학 포함)으로 채용된 사람 중 **33세까지 정해진 수련과정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

○ 선발대상자 연령 * 연령계산방법 : 현재연도 - 태어난 연도

- 의사 : 28세 이하(1993. 1. 1.이후 출생자)
- 통합 과정, 기초의학은 **해당 수련기간 적용** 선발연령 계산

예1) 2021년 의과 인턴으로 채용된 경우 전공의 수련기간 5년으로 2026. 2월 수료(의무사관후보생 지원 가능)

* 산식 : 2026년(수료예정년도) - 1993년생 = 33세

예2) 2021년 통합과정으로 채용된 경우 수련기간이 3년이면 2024. 2월 수료(의무사관후보생 지원 가능)

* 산식 : 2024년(수료예정년도) - 1991년생 = 33세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제10조(결격사유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3. 선발일정

□ **의무사관후보생 현역대체복무지원서 등 접수**(지원자→수련기관→병무청)

ㅇ 지원서 전산 접수(이음포탈) : ’21. 2. 22.(월) ~ 3. 9.(화)

□ **지원서류 대조·보완, 신원조사의뢰** : ’21. 3. 18.(목) ~ 4. 23.(금)

□ **의무사관후보생 선발 및 편입** : ’20. 5. 1.

II 지원서 제출 및 처리 절차

1. 병역의무자 ⇒ 군전공의 수련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제출기간** :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한 기간

□ **제출 서류**

① 현역·대체복무지원서(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③ 신원진술서(A)

④ 기본증명서(상세)

⑤ 신용정보조회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근거

* 무료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 :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코리아 크레딧뷰로(www.allcredit.co.kr), Nice신용평가정보(www.mycredit.co.kr) 등

※ ①,②,③ 서식 및 안내문은 병무청홈페이지(병무뉴스→공지사항) 참고(21. 2.19.까지 게시예정)
(선발인원 대비 지원인원 초과하는 경우 의사 면허시험 성적 추가 제출)

※ 지원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현역복무대체지원서**

– **학력사항** : 소재지는 시·도 및 시·군·구 표기,

– **지원사항** : **의무사관후보생란에만** 체크 * 공중보건의사 란에는 체크하지 않아야 함

– 반드시 지원자란에 **서명 날인(대리서명 불가)** * 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란에도 서명 필수

▸ **신원진술서(A)**

– **국적관계** : 대한민국 국적 표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 각 동의란에 빠짐없이 **전부 기재,** 반드시 성명, 서명날인

*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에서 의무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 기타 안내사항

○ 수련기관에서는 제출서류 접수 시「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사항」을 지원자에게 교부하여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후 신분포기 불가 등을 안내

2. 수련기관의 장 ⇒ 이음(e-um)포탈 접수, 등록 후 서류 제출

1 이음포탈 지원 접수(http://e4c.mma.go.kr)

○ 접수기간 : '21. 2. 22.(월) ~ 3. 9.(화)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의 인적사항,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정확히 입력하고 이상 여부를 재확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접수

※ 사전에 병무청 시스템 담당자 사항 등록되어야 로그인 가능

☞ 지원접수 등록 경로(등록화면에서 식별번호는 지원자 주민번호임)

로그인 ⇒ 장교후보생 지원자 등록 ⇒ 의무사관후보생 ⇒ 접수

2 의무사관후보생 업무관리시스템 문서 등록(http://e4c.mma.go.kr)

○ 등록기간 : '21. 2. 22.(월) ~ 3. 9.(화)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접수

- 제목 : 의무사관후보생 편입지원자 등록(수련기관명) 형식으로 게시
- 첨부파일 : 공문서(수련기관의 장 직인 필수), 지원자 명단

※ 공문서(pdf 등)와 지원자명단(excel) 파일 첨부(압축하지 말고 첨부, 2개이상 파일 첨부 시 ctrl키 사용)

☞ 의무사관후보생 업무관리시스템 등록 경로

로그인 ⇒ 의무사관후보생 ⇒ 편입지원 ⇒ 등록(공문서, 지원자명단)

3 지원서류 제출(우편 접수)

○ 접수기간 : '21. 2. 25.(목) ~ 3. 17.(수)

※ '21. 3. 17.(수)까지 도착한 우편에 한하여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최종 인정'

○ 지원자 명단(성명 가나다 순 - 주민등록번호순) 순으로 개인별 '클립' 편철

※ 지원서류 개인별 편철 순서(클립 편철)

① 현역・대체복무지원서(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② 신원진술서(A)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④ 기본증명서(상세)
⑤ 신용정보조회서

○ 우편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현역입영과 의무사관후보생 담당 앞 【우편번호 35208】

별지 1.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사항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사항

○ 의무사관후보생 포기·취소 가능 여부

ㅇ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면,「병역법시행령」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취소·포기 불가** * 병적편입 : '21. 5. 1.

○ 수련기관 퇴직(레지던트 미승급 포함) 등 수련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ㅇ 가까운 입영기일에 현역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입영하여야 함**

- 수련과정 중단 시에는 재채용 등의 사유로 수련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

○ 군별·역종별 분류 과정 안내

ㅇ 과정 수료자, 수련 중단자, 레지던트 미승급자 등은 군별·역종별 분류 과정을 거쳐 장교(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입영

○ 장교 임용 결격사유 해당자 조치

ㅇ 군인사법 제10조의 장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고,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부과 됨

○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 변경 등

ㅇ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지정된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임의 변경한 경우 가까운 입영기일에 현역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입영하여야 함

2021. . .

병 무 청 장